



그 法 알

# ‘母 장례식 방명록’ 남매들 소송전... 2심 왜 정태영 손 들어줬나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을 형제들끼리 공유하는 것은 문상객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방명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과 동생들 사이에 벌어진 유산 다툼 소송전 중에 하나죠. ‘방명록 소송’ 이야기입니다.

우리 법에는 장례식 방명록을 누가, 어디까지 열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우리 장례 ‘관습’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했죠. 1심과 2심 판결문에서는 재판부가 우리 모두 한 번쯤 경험한 장례 절차를 떠올리며 고민을 풀어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방명록(부의록 조문록)〉

[그 法 알 사건번호 117]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 두고 법적 다툼...1심과 2심, 엇갈린 이유

정 부회장의 모친 조모씨는 지난 2019년 2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정 부회장의 동생 2명은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던 정 부회장은 몇 주 뒤 동생들 조문객이라고 판단한 133명 명단만 내줬습니다. 동생들이 항의하자 약 300명의 명단을 다시 선별해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 갈등은 한 차례 더 반복됐습니다. 정 부회장의 부친인 故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이 지난 2020년 11월 별세했는데요. 정 부회장은 이때도 동생들의 조문객이라고 판단한 50명의 명단만 내줬습니다.

동생들은 어머니와 아버지 장례식의 방명록 사본을 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동생들 손님은 선별해서 이미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사본을 내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동생들과 관련 없는 문상객 명단을 제

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심각한 결례'라고 설명했죠. 지난해 2월 동생들은 결국 정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방명록 인도청구'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이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첫 변론기일에 정 부회장에게 “방명록이 없는지 잘 한번 찾아보라.”고 권고했습니다. 이후 정 부회장은 “아버지 장례식 방명록을 발견했다.”며 동생들에게 원본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어머니 장례식 방명록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고, 소송은 계속됐습니다.

동생들은 요구를 더 구체화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방명록과 화환발송명부, 그리고 아버지 장례식의 화환발송명부를 달라는 겁니다.

## 관련 법령은?

우리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합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 조항을 인용했습니다. “방명록과 화환발송명부의 열람 및 등사에 관해서는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민법의 일반원리와 장례식이 가지는 전례적, 사회·문화적 의미, 장례식장에 비치된 방명록 및 화환발송명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습 및 조리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 법원 판단은?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에서는 정 부회장이 졌습니다.

당시 정 부회장 측은 “상주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문상객들은 ‘개인정보주체’에 해당한다.”며 ‘문상객들은 자신과 관계있는 특정 상주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허락한다는 의사로 방명록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생들이 모든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문상객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방명록과 화환발송명부가 지금은 없다.”라는 주장도 이어갔죠.

동생들 측은 ‘관습과 조리’로 맞섰습니다. ‘방명록과 화환발송명부는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관습이자 조리’라며 “방명록에 이름을 적은 문상객들이 특정한 유족에게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정 부회장이 동생들에게 명단을 공유할 관습상·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장례예절’을 언급했습니다. “상주·상제들이 문상객들에게 답례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이고, 이를 위해 방명록을 비치하거나 조의금 봉투에 적힌 문상객들의 이름을 확인하거나 화환발송명부를 기록한다.”면서요. 방명록과 화환발송명부에는 이런 중요성이 담

겨 있으니, 자녀들이 모두 명단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주·상제가 문상객들의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회장 주장대로 문상객들이 특정 상주에게 개인정보 수집을 허락하며 이름을 남긴다면, 상주·상제 별로 방명록이 따로따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재판부는 문상객들도 상주·상제 별로 방명록이 구분돼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 점, 상주·상제와 상관없이 고인 본인에게 애도를 표하기 위해 문상을 하는 경우도 많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방명록과 화환발송명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정 부회장의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이미지〉

그런데 항소심 결과는 달랐습니다. 지난 24일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 홍승면 이재신 김영현)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정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쟁점은 1심에 비해 간단했습니다. “방명록을 분실하거나 폐기했다”는 정 부회장 측 주장이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정 부회장이 어머니 장례식 이후에 동생들 측 조문객 300명 명단을 제공한 것, 그리고 1심 재판 도중 아버지 장례식 방명록 원본을 제공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장례식을 1년 9개월 간격으로 치른 점을 고려하면, 방명록 작성자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아버지 장례식 방명록 명단을 놓고 어머니 장례식 문상객에 대한 기억을 되살린다면 정 부회장이 넘긴 300명 외 어머니 장례식 문상객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 부회장이 고의로 은폐하거나 동생들에게 제공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동생들은 아버지 장례식 방명록 원본과 정 부회장이 선별해 제공한 어머니 장례식 조문객 명단을 비교해보니 46명만이 겹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버지 장례식 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동생들 측 문상객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정 부회장이 특정 문상객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면 아버지 장례식 방명록은 왜 원본 그대로 내놨겠느냐고 지적합니다. 정 부회장이 누구를 감추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동생들이 특별히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관습과 조리’ 역시 등장합니다. 재판부는 “관습상 장례식 방명록과 화환발송명부 그 자체의 보존에 어떤 가치를 두는 것은 아니다.”라며 ‘1심 재판이 시작됐을 때는 이미 어머니 장례식 이후 2년이 지난 뒤라 문상객에 대한 감사 인사는 모두 마쳤을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방명록 원본을 중요한 물건으로 보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아버지 장례식의 경우 상대적으로 최근에 치러져 방명록이 남아있던 것이고요.

화환발송명부 역시 없어졌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정 부회장은 명부 작성을 도운 직원들 명의 서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했는데도 화환발송명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심 재판부는 정 부회장이 “방명록과 화환발송명부가 없다.”는 주장을 재판 도중 갑자기 내놨다고 지적했었는데요. 2심 재판부는 이를 달리 판단했습니다. “1심 첫 변론 기일에 재판부가 방명록을 한 번 찾아보라고 권고하자 정 부회장이 그제야 방명록이 있는지 확인해봤다는 것을 일관적으로 주장해왔다.”는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정 부회장의 태도를 보더라도 특별히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분실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 그 법 알

‘그 법’을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어려워 서 다가가기 힘든 법률 세상을 우리 생활 주변의 사건 이야기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고민해 볼만한 법적 쟁점과 사회 변화로 달라지는 새로운 법률 해석도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출처/중앙일보)